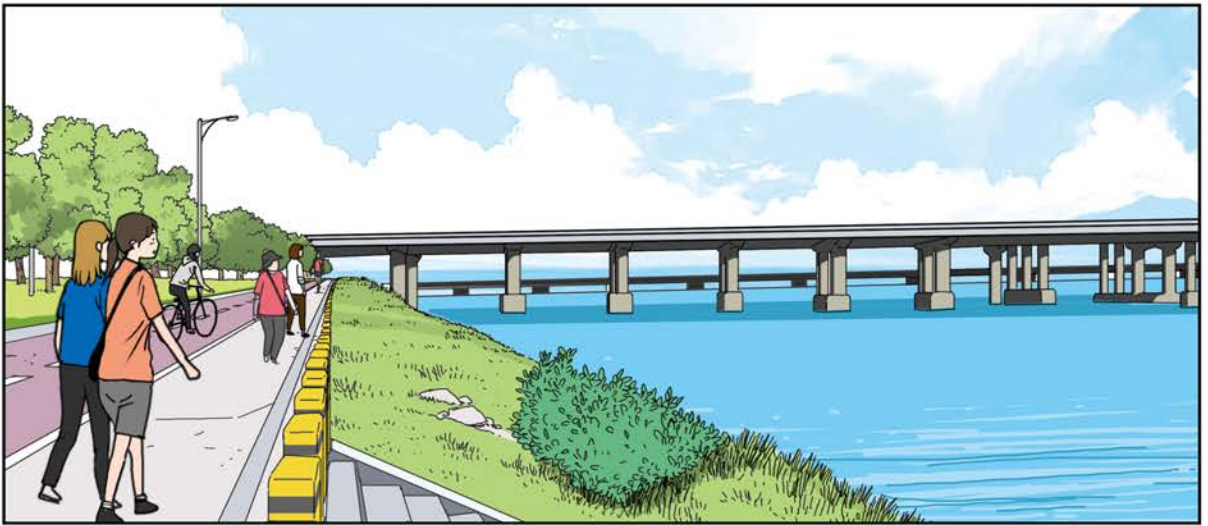


초경량비행장치!
이제 제도를 알고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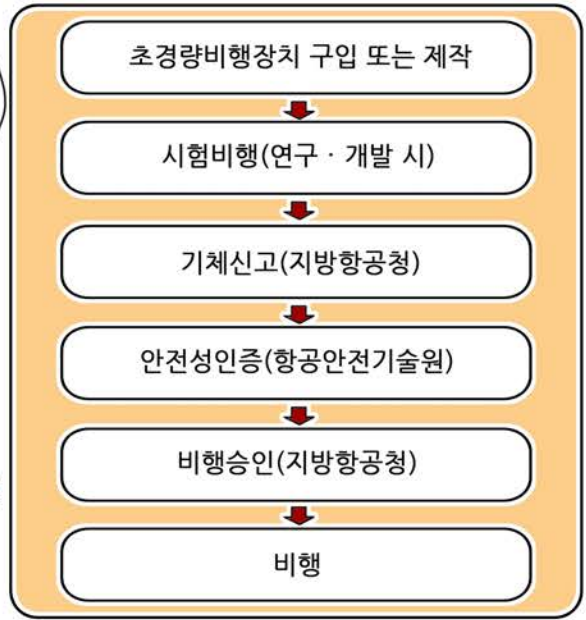


어허~ 큰일이네요! 이렇게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비행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제가 지금 시간이 좀 있으니 초경량비행장치가 뭔지 신고와 안전성인증은 뭐고 절차는 어떤지 알려드릴게요.



초경량비행장치 분류

유 형	사 양
 동력비행장치	좌석 1개, 자체중량 115kg 이하
 인력활공기	자체중량 70kg 이하인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유인/무인자유기구, 계류식 기구
 회전익비행장치	좌석 1개, 자체중량 115kg 이하인 초경량자이로플레인, 초경량헬리콥터
 동력패러글라이더	착륙장치가 없는 비행장치(2인승 포함) 또는 착륙장치가 있는 것으로서 좌석이 1개, 자체중량 115Kg이하
 무인비행장치	무인동력비행장치(자체중량 150kg 이하) 무인비행선(자체중량 180kg 이하, 길이 20m 이하)
 낙하산류	항력을 발생시켜 대기 중을 낙하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



우선 신고부터 알아볼게요.
초경량비행장치는 신고는 각 지방항공청
으로 신고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신고자 편의를 위해 신고방법도
다양하고, 절차도 간단해요.

초경량비행장치 장치신고방법

- 1) 온라인:민원24시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신규신고 신청
(<https://www.gov.kr>)
- 2) 각 지방항공청에 방문, e-mail, Fax로 신청
(연락처) 서울지방항공청 : 032-740-2169
부산지방항공청 : 051-974-2147
제주지방항공청 : 064-797-1741

서류같은 것도
필요한가요?

궁금한 것도 많다.
또 드론에 한동안
정신 팔리겠군. 어휴....

게임에 이제
드론까지....

신고를 하기위한 연락처는
알겠는데 그럼 절차는 어떤가요?
많이 복잡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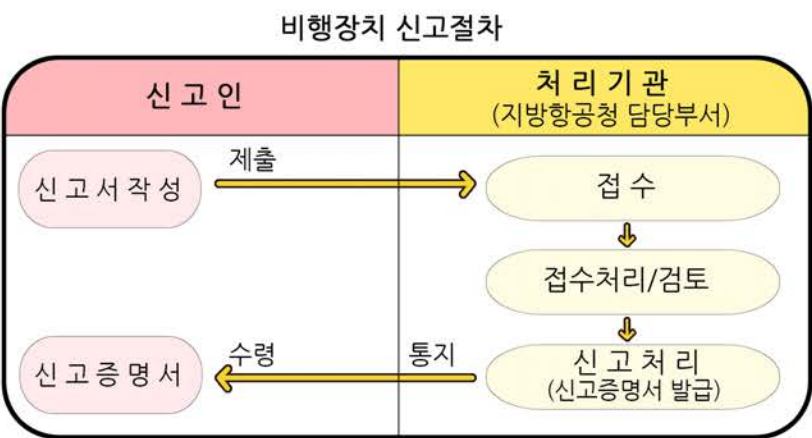
아니요. 간단해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정도...

뭐야. 생각보다
광장히 간단한데...
연능 신고부터
해야겠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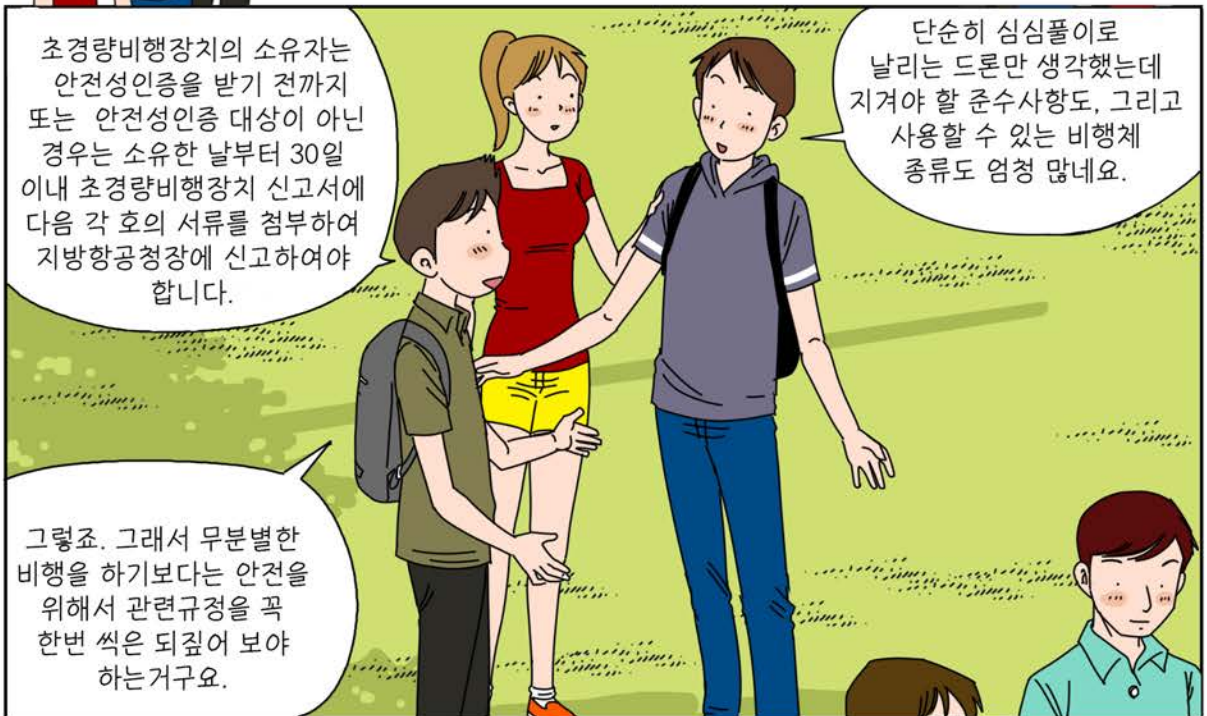
신고서 및 제출서류 (항공법 안전법 제301조)

-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진
- 보험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리용의 경우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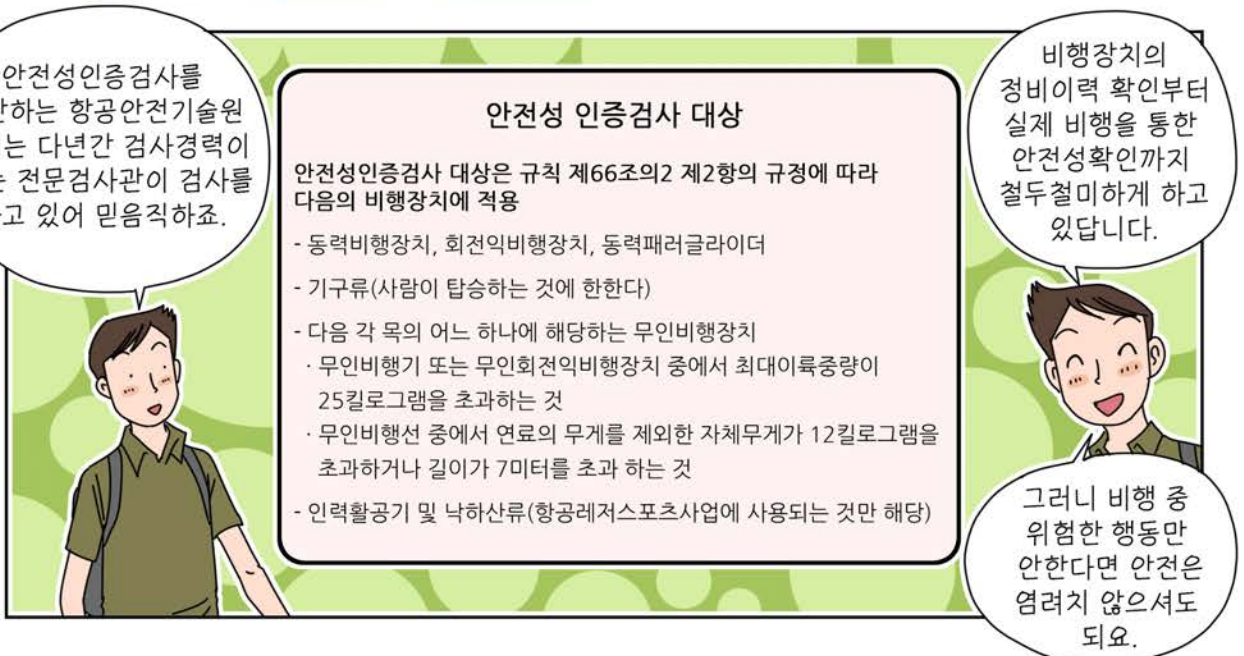


1.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2. 계류식(繫留式)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제외)
3. 계류식 무인비행장치
4. 낙하산류
5.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 (배터리 무게를 포함한다)가 12킬로그램 이하인 것
6.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 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7. 연구기관 등이 시조사·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8.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
9.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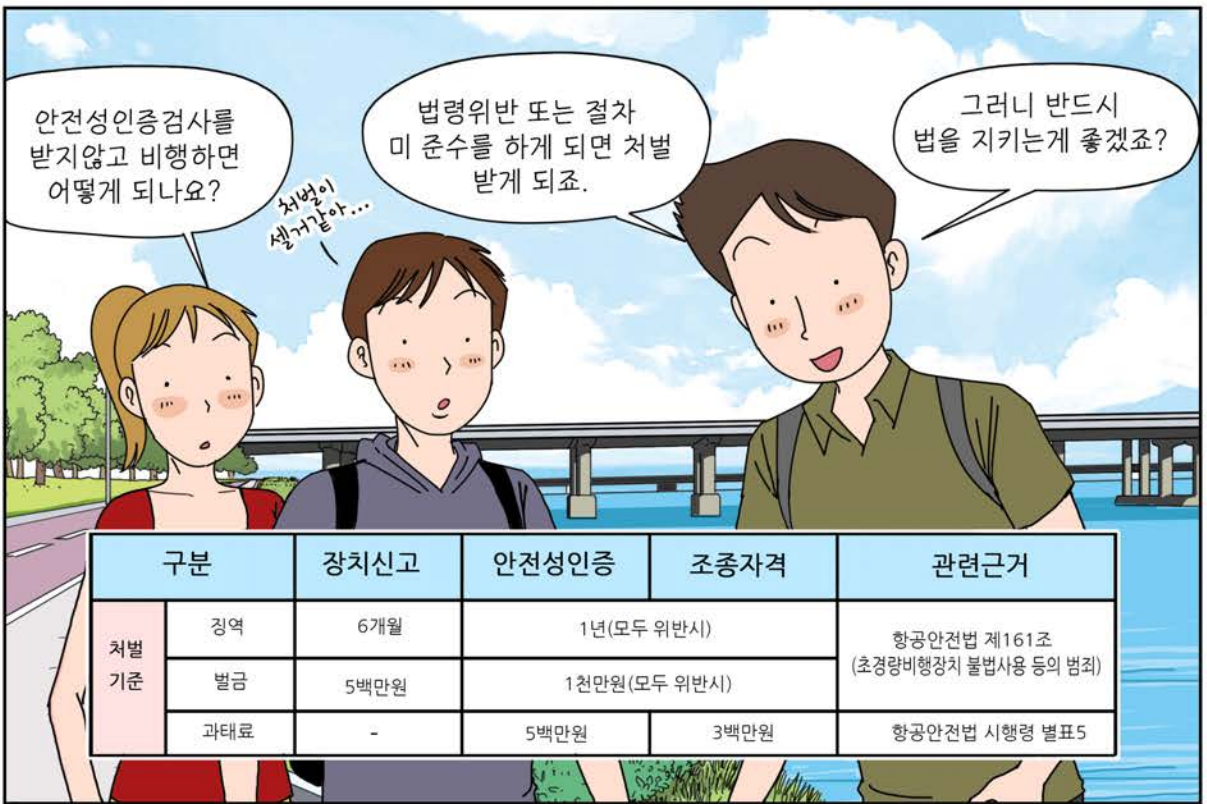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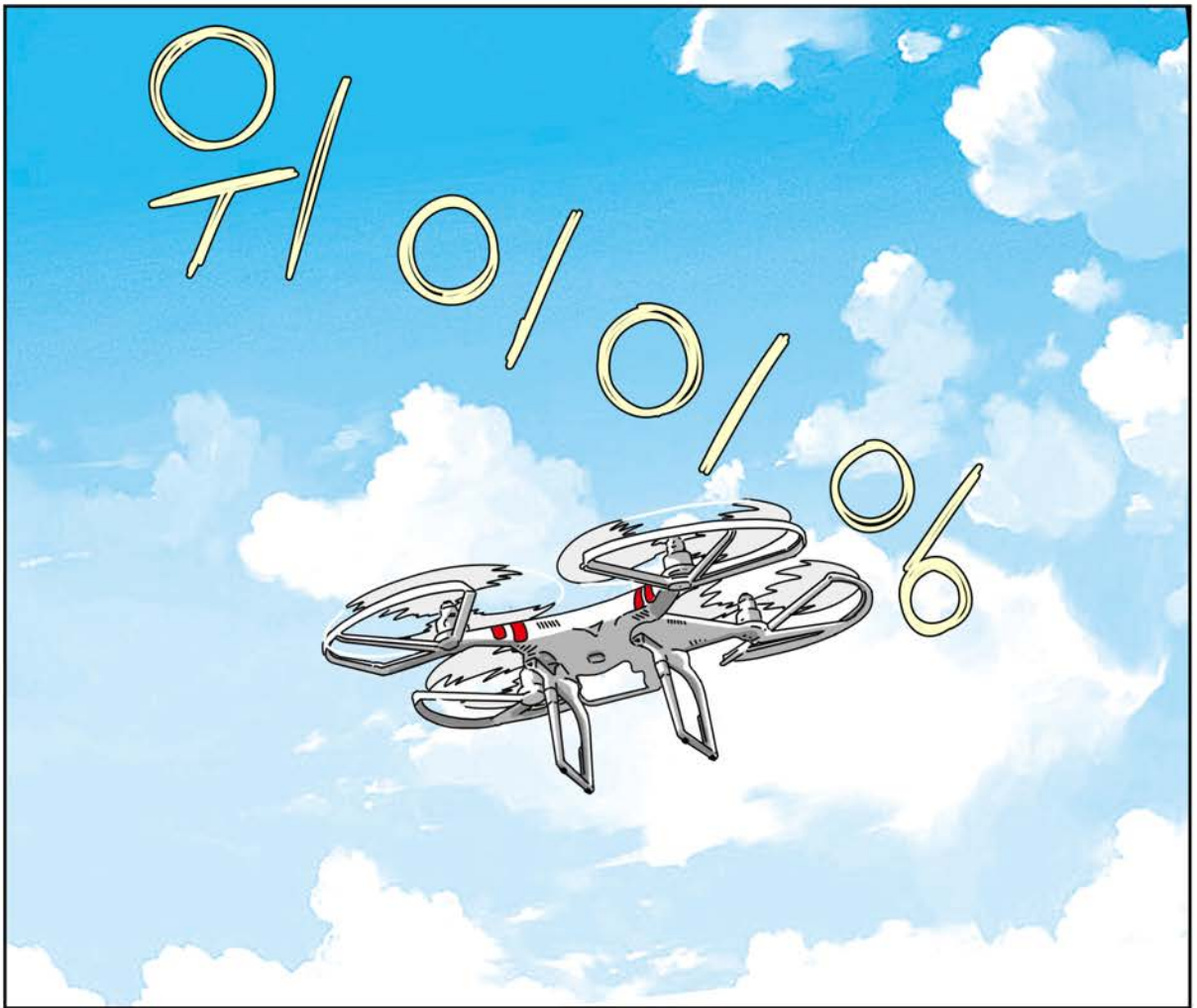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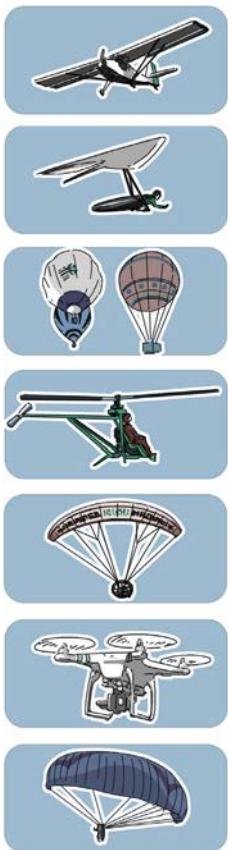












“살기좋은 국토, 편리한 교통”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부패행위 또는 부실 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조리신고센터



인 터 넷 신 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감찰팀
전 화 상 담	TEL. 044-201-3123 FAX. 044-201-5506